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8월 31일, 포항시장

2) 회부일자 : 2026년 9월 1일

3) 상정일자

❍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6. 9. 11.)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내외 문화 탐방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반영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문화 탐방 대상 조정(안 제5조제4호)

• 장기근속 공무원 일률적 지원에서 시정발전 기여자에 한해 지원

나. 정년・명예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삭제 (안 제5조제6호)

다.「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정의 통일(안 제5조제16호)

3)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경희)

○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자치단체별 형평성 논란 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권고(2021.4.12.)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지원은 삭제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대상 국내외 문화 탐방 지원은 일률적 지원에서 시정발전 기여자에 한해 지원토록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불일치 하는 다자녀 가구 정의를 관련 조례에 맞추어 정비하는 부분은 다자녀에 대한 정의가 2024년 3월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정비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